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132908 손해배상 등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강민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매체를 운영하면서, IT, 블록체인, 가상 자산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전문 매체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3.부터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D사이트'라고 한다) 및 "D"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D"은 각종 가상자산(코인) 관련 게시판 운영, 가상자산 관련 뉴스 및 공시 게재, 각종 시세조회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나. 피고는 2019. 2. 3.부터 2021. 5. 21.경까지 위 D사이트에 원고가 작성한 12,997건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였고, 현재까지도 게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복제, 배포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을 '상업용 온라인 이용'에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기사 1건당 30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고, 원고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기사에 관한 신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위 규정은 원고와 동일한 언론사들이 통상적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0

로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 605,100,000원(= 30만 원 x 2,017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D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쌍방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대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작성한 기자가 자료 분석,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소재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해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협약

가)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의 마케팅 팀장 E는 2018. 11. 중순 피고에게 피고의 위 D사이트에 원고의 뉴스를 게재하고 원고의 로고, 이미지 사용 및 상품 소개, 판매 중개의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자는 취지의 업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0

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제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3. 19.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뉴스 공식계정을 부여하고,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 담당자인 F 본부장은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공식계정으로 등록할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위 이메일과 해당 아이디(G)로, 원고가 알려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에서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사 제목, 내용, 최근 기사를 수집하는 크롤링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 원고 회사의 F 본부장은 2019. 3. 19. 피고 회사 담당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계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직접 기사를 올려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 회사 담당자는 "기사 올리는 건 RSS형태로 저희가 크롤링해 자동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A(원고)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크롤링해 봇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다.

(4) 피고 회사 담당자는 2019. 3. 20. 원고 회사의 F 본부장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만들어드린 계정으로 뉴스 크롤링 작업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주소 3 생략) 뉴스크롤링 이외에 게시글 작성 관련해서는 계정이용에 편의상 가이드 공유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 마케팅 패키지에 들어가는 공식계정 가이드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감안하셔서 참고해주세요"라고 안내하였고, F은 "제 메일로 가이드 라인 주셨죠. 혹시 제가 카페에 먼저 가입한 뒤에 진행하면 될까요?"라고 물었다.

(5) 원고는 2021. 4. 30. 피고에게 '발신자 : H협회 회장사 주식회사 I, 수신자 : 피고'로 되고 '피고가 위 협회 소속 원고, J, K 등 3개 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였으므로 총액 574억 8,57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이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0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2년여 동안 이 사건 기사를 위 D사이트에 게재하였음에도 원고가 2021. 4. 30.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D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름, 기사가 노출되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누리고, 마케팅 활동도 확대하는 등 광고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 D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